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허 해 관*

-
- I. 서 언
 - II. 인도의 개념
 - III. 인도장소
 - IV. 인도시기
 - V.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물품인도의무에 미치는 영향
 - VI. 결 언
-

주제어 : 물품인도, 인도장소, 인도시기, 교부, 조기인도, 일부인도

I. 서 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¹⁾(본고에서 간단히 협약이라 한다)은 영국을 제외한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²⁾ 협약상 매도인의 기본적 세 가지 의무는 물품인도

* 송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조교수, E-Mail : hkhur@korea.com

1) 협약은 1980년에 제정되어 1988년 1월 1일에 발효하였고, 2018년 1월 10일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총 89개국이 그 체약국이다. 한국은 2004년 2월 17일에 협약에 가입하였고, 협약은 2005년 3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였다.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sale_goods/1980CISG_status.html> 참조.

2) 박남규,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 -

2 무역상무연구 제77권 (2018. 2)

의무와 서류교부의무, 소유권이전의무이다.³⁾ 그 중 물품인도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 상응하는 의무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⁴⁾

여기의 물품인도의무는 넓게는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까지도 포함하지 만 좁게는 계약과 협약에 따라 정하여지는 장소와 시기를 준수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의미하고 통상 이러한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협약은 제31조에서 물품의 인도장소를 규정하고 제33조에서 인도시기를 규정한다. 본고는 이러한 두 규정을 중심으로 협약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간단히 인도의무라고도 한다)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먼저 협약상 인도(引渡, delivery)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하며, 이에 협약상 인도를 “교부”와 “처분 하에 두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 협약상 인도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II). 이어 본고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장소의 문제를 고찰하며, 이를 위하여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III), 다음으로 본고는 인도시기의 문제를 고찰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 인도기일이나 인도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면서 아울러 인도기간 중 인도일자의 선택권을 누가 갖는지의 문제도 함께 검토한다(IV). 끝으로 본고에서는 관련 문제로서, 매도인이 잘못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거나 잘못된 장소로 물품을 송부하는 경우에 그것이 인도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문제와 조기인도, 일부인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 후(V), 결론으로 글을 마무리한다(VI).

II. 인도의 개념

협약은 인도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나 제31조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를 규정하면서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⁵⁾와 그렇지 않은 경우⁶⁾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 물품을 제1운송인에게 “교부”(hand over)하도록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도록]”(place at buyer's disposal) 한다. 그에 따라 협약상 인도는 “교부”와 “처분 하에 두는 것” 두 가지가 있다.⁷⁾

CISG와 Incoterms 2010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6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p. 4.

3) 협약 제30조 참조.

4) 이기수·신창섭, 국제거래법, 제6판, 세창출판사, 2015, p. 71. 이러한 태도는 Incoterms에도 반영되어 있다(Incoterms 2010 각 A1 및 B1 참조).

5) 협약 제31조 가호.

6) 협약 제31조 나호 및 다호.

1. 교부의 의미

협약상 교부란 물품에 대한 물리적 지배(physical custody)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⁸⁾ 이것이 통설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생각건대 협약상 교부는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물리적 지배를 종료하고 운송인이 그 지배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협약상 교부는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물리적 지배를 종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송인이 그 물리적 지배를 확보한 때에 완료된다.⁹⁾ 따라서 협약 제31조 가호에서 매도인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물품을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수배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¹⁰⁾ 그때 교부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다만 교부가 언제 완성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따라서 예컨대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이 운영하는 CY나 CFS 혹은 항구나 공항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교부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해당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의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 교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가능하다.¹¹⁾

2. ‘처분 하에 두는 것’의 의미

다음으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은 생각건대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물리적 지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필요한 모든 행위를 다하는 것이다.¹²⁾

-
- 7)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p. 124; 그러나 김상만, “Incoterms 2010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CISG 상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 및 서류인도 의무에 대한 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102호, 법무부, 2011. 12, p. 136은 협약상 인도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 8)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16 edition, p. 310(이하 ‘*UNCITRAL Digest(2016)*’으로 인용함). 허해관·오테형,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위험이전”, 무역상무연구 제7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7, p. 11. 석광현, 전게서, p. 244와 같이, 이를 물품을 현실적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하거나 양석완, 전게논문, p. 665와 같이 사실상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 9) Hachem, *Commentary on Article 67*, p. 973; *UNCITRAL Digest(2016)*, p. 310; 허해관·오테형, 전게논문, p. 11.
- 10) *UNCITRAL Digest(2016)*, p. 310. 같은 맥락에서 석광현, 전게서, p. 244에 의하면, 교부는 통상 물품이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다만 이기수·신창섭, 전게서, p. 73은 “교부는 운송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이전받아 트럭 등 자기의 운송수단에 싣는 등 운송인이 운송의 목적으로 물품에 대한 물리적 점유를 취한 때에 완성된다.”고 한다.
- 11) 허해관·오테형, 전게논문, p. 11도 같은 취지이다.
- 12) 석광현, 전게서, p. 127; 허해관·오테형, 전게논문, p. 17; *UNCITRAL Digest(2016)*, p. 129;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in: Ingeborg Schwenzer ed, *Commentary on the*

4 무역상무연구 제77권 (2018. 2)

이는 매수인이 더 이상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물품에 대한 지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다. 만약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물리적 지배를 확보’(수령)하기 위하여 먼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면 물품은 아직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것이 아니다.¹³⁾ 예컨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수령하기 전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거나 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비록 물품이 자유로이 접근가능하더라도 그 물품은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것이 아니다.¹⁴⁾

관련하여, 또한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것으로 되기 위하여, 그에 관한 매도인의 통지가 필요한지가 문제되는데, 생각건대 이는 긍정되어야 한다.¹⁵⁾ 매수인이 물품이 그의 처분 하에 놓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그 물품에 대한 물리적 지배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⁶⁾ 다만 매수인이 어떤 경로로 물품이 자신의 처분 하에 놓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통지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¹⁷⁾ 또한 특정한 일자에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고 그 일자에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에도 생각건대 매도인의 통지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¹⁸⁾

3. 인도의 개념과 물품부적합의 관계

UNIDROIT의 1964년 통일국제물품매매법(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IS)과 달리 협약은 “인도”의 개념과 물품의 계약적합성을 분리한다.¹⁹⁾ 따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이하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로 인용함), p. 535. 그러나 양석완,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인도’의 범위에 관한 법적 검토”, 기업법연구 제23권 제4호(한국기업법학회, 2009), p. 480은 “협약에서 인도라고 할 때 이는 물품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의 이전 또는 물리적인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한다”고 하는바, 이는 위 본문과 같은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다.

13)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 537; 허해관·오테형, 전게논문, pp. 17~18.

14) *Ibid.*

15) 허해관·오테형, 전게논문, p. 18. 최준선, 국제거래법, 제10판, 삼영사, 2015, p. 170(“구체적으로는 매도인이 물품을 특정하고 포장하는 등 인도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매수인에게 통지하면 된다.”)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이기수·신창섭, 전게서, p. 74도 같다.

16)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 414; 오원석 역, UN 통일매매법, 제2판, 삼영사, 2004, p. 526. Hachem, Commentary on Article 69, p. 991에 의하면, 다수설은 이러한 통지요건을 부정한다고 한다(허해관·오테형, 전게논문, p. 18에서 재인용).

17) 허해관·오테형, 전게논문, p. 18.

18)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 536; Honnold, *op. cit.*, p. 414; 오원석 역, 전게서, pp. 525~526; 허해관·오테형, 전게논문, p. 18.

라서 협약상으로는 매도인은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물품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²⁰⁾ 물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지만, 매수인으로서 물품의 불인도(non-delivery)나 인도지체(late delivery)를 이유로 이행청구²¹⁾나 부가기간지정,²²⁾ 계약해제,²³⁾ 손해배상청구²⁴⁾ 등을 할 수 없다. 이는 계약물품과 다른 종류의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도 같다.²⁵⁾

III. 인도장소

1.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1) 운송인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인의 운송인이 운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중 제1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²⁶⁾ 즉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의 이행지는 운송인 곧 운송인이 소재한 곳이다.²⁷⁾

그러나 협약 제31조 가호에서 말하는 운송인은 매도인이나 매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맡은 자 즉 독립된 운송인(independent carrier)을 말하며,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이 운송인인 경우나 직접 또는 그의 직원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는 제외된다.²⁸⁾ 법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자연인도 운송인이 될 수 있다. 매

19) Honnold, *op. cit.*, p. 241; 오원석 역, 전게서, p. 311.

20) 이기수·신창섭, 전게서, p.72;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 530; Huber and Widmer, *Commentary on Articles 31*, p. 352.

21) 협약 제46조 제1항.

22) 협약 제47조.

23) 협약 제49조 제1항.

24) 협약 제74조 이하.

25)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 530; Huber and Widmer, *Commentary on Articles 31*, p. 352.

26) 협약 제31조 가호.

27) 최준선, 전게서, p. 169; 이기수·신창섭, 전게서, p. 72; 김상만, 전계논문, p. 139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28) 석광현, 전게서, p. 129; Honnold, *op. cit.*, p. 239; 오원석 역, 전게서, p. 308; 이기수·신창섭, 전게서, p. 72;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 526; Ulrich Huber and Corinne Widmer, *Commentary on Article 31*, in: Peter Schlechtriem and Ingeborg Schwenzer eds, *Commentary*

6 무역상무연구 제77권 (2018. 2)

도인 자신이 운송의 일부를 담당하는 경우에 물품이 독립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때 인도가 일어난다.²⁹⁾

매도인이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매수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공급자로 하여금 바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 인도는 공급자가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때 일어나며, 공급자가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운송이 일어나는 때가 아니다.³⁰⁾

한편 복수의 독립된 운송인이 순차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경우에 인도는 물품이 제1운송인 즉 최초의 운송구간을 맡은 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일어난다. 복합운송의 경우에 단일한 복합운송인이 단일한 복합운송계약 하에서 복수의 운송방식/운송수단을 사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데, 이때 인도는 최초의 복합운송구간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때 일어난다.

문제는 운송과정에 이른바 포워더(*freight forwarder*)가 관여하는 경우인데, 포워더도 제31조 가호에서 말하는 운송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그 여부는 포워더가 실제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지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포워더가 매도인을 위하여 실제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에 인도는 물품이 실제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일어난다.³¹⁾ 그러나 포워더가 거기서 더 나아가 운송을 실제로 일부 실행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될 수 있다.³²⁾ 어려운 문제는 매도인이 포워더에게 물품을 교부하면서 포워더에게 지시하여 포워더로 하여금 실제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실제운송인이 물품을 운송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생각건대 이러한 경우에 포워더는 실제로 운송을 실행하는 일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제31조 가호에서 말하는 운송인이라고 하여야 하고, 이때 인도는 매도인이 포워더에게 물품을 교부한 시점에 일어난다고 하여야 한다.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독립된 제3자에게 교부되었기 때문이다.³³⁾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2nd(Englis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이하 'Huber and Widmer, Commentary on Articles 31'로 인용함), p. 348.

29)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 526.

30)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 526; Huber and Widmer, Commentary on Articles 31, p. 349.

31) 석광현, 전제서, p. 129;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 528; Huber and Widmer, Commentary on Articles 31, pp. 349~340.

32)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 528; Huber and Widmer, Commentary on Articles 31, p. 350.

33)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 528.

2) 운송

제31조 가호에서 말하는 운송은 물품을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운송에 한정된다. 다만 여기의 매수인은 반드시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매도인과 매수인이 제3자에게 물품을 송부하도록 합의한 경우와 같이 제3자일 수도 있다.

매도인이 물품을 제31조 가호에서 말하는 운송인에게 보내기 위하여 다른 어떤 (내륙)운송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도는 후자의 (내륙)운송인에게 교부된 때가 아니라 후자의 (내륙)운송인이 전자의 운송인에게 교부한 때 비로소 일어난다. 예컨대, 국제물품매매에서 국제운송의 전후에는 실무적으로 각각 수출지내륙운송 혹은 반출운송과 수입지내륙운송 혹은 반입운송이라 불리는 이른바 현지운송이 필요한데, 그 중 반출운송이 제31조 가호에서 말하는 운송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부정되어야 한다. 반출운송의 목적은 물품을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컨대 항구(선적항)나 공항 내의 일정한 물품보관소나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국제운송을 담당하는 다른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교부장소 - 운송인이 소재한 곳

매도인은 물품을 어디서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가? 매매계약에서 그러한 교부장소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³⁴⁾ 문제는 계약에서 그에 관하여 침묵한 경우인데, 생각건대 원칙적으로 이는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물론 매도인은 신의의 원칙³⁵⁾에 따라 합리적인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³⁶⁾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컨대 특히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러한 선택권을 매수인이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물품 교부지점이 매수인과 운송인 사이에 합의되고 이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한다면 매도인은 그에 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Incoterms 2010은 이를 명시한다.³⁷⁾

34) 실무상 대부분의 국제물품매매의 경우에 Incoterms의 FOB 또는 CIF 조건으로, 일부의 경우에는 FCA, CIP 또는 CPT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그 때 선적항·양륙항, 발송공항·도착공항, 발송지·도착지를 각각 약정한다. 그리하여 매도인은 약정된 선적항에서 예컨대 CIF 조건의 경우에는 자신이 선정한 선박에, FOB 조건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선박에 선적하여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 의무를 이행한다. 이는 곧 Incoterms가 매매계약에서 채택된 경우에 Incoterms상의 인도장소가 우선 적용되는 것이다(박성철, “Incoterms 2010상 물품인도 및 운송계약조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p. 78).

35) 협약 제7조 제2항.

36)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 530; Huber and Widmer, Commentary on Articles 31, p. 351.

당사자간에 교부장소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그 장소(place)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point)에서 교부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물론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러한 지점을 계약에서 합의하여 두었다면 물품은 그 지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실무상 그러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생각건대 그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갖는다고 하여야 한다. 특히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한다.³⁸⁾

2.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1) 물품소재지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지 않고³⁹⁾ 또한 매도인이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물품소재지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물품소재지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⁴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을 각각의 소재지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어야 하고, 매수인은 각각의 소재지로서 (혹은 운송인을 거기로 보내어)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첫째, 특정물을 매매하는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그 특정물의 소재지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 매도인은 그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⁴¹⁾ 이러한 경우에는 그 특정물의 소재지가 곧 물품인도 의무의 이행지이다.

둘째, 특정한 재고품에서 인출되는 불특정물을 매매하는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그 재고품의 소재지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 매도인은 그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⁴²⁾ 예컨대 특정한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의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에 그 창고의 소재지가 곧 인도 의무의 이행지가 된다.

셋째, 장차 제조될 불특정물을 매매하는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체결

37) 예컨대, Incoterms 2010 CPT 조건과 CIP 조건의 각 A3에서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도인은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인도지점(point of delivery) [...]을 선택할 수 있다.

38) Incoterms 2010은 이러한 상황을 겨냥하여 규정을 두는바, 예컨대, Incoterms 2010 FCA 조건 B7에 의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도를 수령할 지정장소 내의 지점”(the point of taking delivery within the named place)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에 대하여 매도인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통지된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39) 박남규, 전제논문, p. 8에 의하면 우리나라 실무상 국제물품매매의 경우에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40) 협약 제31조 나호.

41) *Ibid.*

42) *Ibid.*

시에 그 제조지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 매도인은 그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⁴³⁾ 즉 계약체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매도인이 장차 제조하여 인도하여야 하는 매매의 경우에 그 제조지가 (예컨대 매도인의 공장이) 곧 인도의무의 이행지가 된다.

넷째, 장차 생산되는 불특정물을 매매하는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그 생산지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 매도인은 그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⁴⁴⁾ 예컨대 특정한 재배지에서 재배되는 곡물이나 과일은 그 재배지(생산지)가 곧 인도의무의 이행지가 된다.

그러나 위의 모든 경우에 제31조 나호의 명시적 범문에 의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체결시에 각각의 소재지를 알았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에 비로소 매수인이 그러한 장소를 알게 되는 경우에 이는 물품인도의무의 이행지로 인정되지 못한다.⁴⁵⁾ 또한 매도인 및 매수인이 그러한 장소를 실제로 “알고 있었[어야]” 하므로, 특히 매수인이 그러한 장소를 ‘알았어야 했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다.⁴⁶⁾

2) 매도인의 영업소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지 않고 매도인이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물품소재지를 몰랐던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⁴⁷⁾ 즉 매도인은 물품을 자신의 영업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어야 하고 매수인은 거기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협약은 물품인도의무에 관하여 추심채무원칙을 따르고 있다.⁴⁸⁾ 여기의 영업소는 매도인이 복수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를 말한다.⁴⁹⁾

또한 여기의 영업소는 협약 제31조 다호의 범문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의 영업소를 말한다. 따라서 문자적 해석으로 계약체결 후 영업소가 변경되더라도 인도의무의 이행지는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매도인이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원래의 주소지에서 인도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협약은 이에 관하여 침묵한다. UNIDROIT 원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당사자는 계약체결 후 영업소의 변경으로 이행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

43) *Ibid.*

44) *Ibid.*

45) 이기수·신창섭, 전게서, p. 74.

46) 최준선, 전게서, p. 170;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 535.

47) 협약 제31조 다호.

48) 석광현, 전게서, p. 131.

49) 협약 제10조 가호 참조.

가를 부담하여야 한다.”⁵⁰⁾ 생각건대 이러한 규칙은 협약상 신의의 원칙, 특히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협약에서도 수용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도인은 물품인도에 관하여 자신의 영업소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의 새로운 영업소에서 인도하여야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수인의 추가비용(예컨대 새로운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함으로 추가되는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상 신의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매수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 이전 사실을 매수인에게 적시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⁵¹⁾

IV. 인도시기

1. 인도기일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 기일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⁵²⁾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당사자는 계약에서 달력상 특정한 일자를 인도기일로 정할 수도 있고, 둘째 계약에서 인도기일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둘 수도 있다.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 예컨대 당사자는 주문일의 다음날을 인도기일로 한다고 약정할 수 있고, 신용장개설일로부터 10일이 되는 일자를 인도기일로 약정할 수도 있다. 또한 당사자는 인도기일을 매도인이나 매수인 또는 제3자가 정하도록 할 수도 있고, 복수의 일자 중에서 매도인이나 매수인 또는 제3자가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다.

매도인이 위와 같은 인도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이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다. 그렇다면 그 일자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인도하여야 하는가? 생각건대 계약에서 인도시간(예컨대 10시 30분)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하되,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매도인은 제33조 나호의 유추적용에 따라 원칙적으로 인도기일 중에 구체적으로 언제 인도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50) UNIDROIT 원칙 제6.1.6조 제2항.

51) UNIDROIT, *UNIDROIT Principles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2016*, UNIDROIT, 2016, p. 194(이하 ‘UNIDROIT Principles 2016’으로 인용함); 오원석·최준선·허해관 공역,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법문사, 2006, pp. 176~177.

52) 협약 제33조 가호. 다만 국제매매에서 인도시기를 계약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다(이기수·신창섭, 전거서, p. 74).

고 하여야 한다.⁵³⁾ 그러나 이러한 선택권은 신의의 원칙⁵⁴⁾ 특히 합리성의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제31조 나호와 다호에 따라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어야 하는 경우에 그 장소의 통상적인 영업시간 중에 인도하여야 한다.⁵⁵⁾

나아가 당해 인도기일이 그 장소에서 공휴일이거나 비영업일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도 문제되는바, 협약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먼저 당사자간 합의나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또는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⁵⁶⁾ 따라서 인도기일이 공휴일이거나 비영업일인 경우에 그 다음의 최초 영업일에 물품을 인도하는 합의나 관례,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문제는 당사자간 합의나 관례, 관행을 통하여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인데, 생각건대, 신의의 원칙에 따라 그 다음의 최초 영업일을 인도기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인도기간

1) 인도기간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을 그 기간 내의 어느 일자에 인도하여야 한다.⁵⁷⁾

여기의 인도기간을 정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당사자는 계약에서 달력상 일정한 기간을 인도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예컨대 당사자는 “3월에” 또는 “3월 둘째 주에” 또는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등과 같이 약정할 수 있다. 인도기간의 초일이나 말일을 생략할 수도 있으며, 예컨대 “3월 31일까지” 또는 “3월 1일 이후”에 인도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둘째 당사자는 계약에서 인도기간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둘 수 있고, 그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예컨대 당사자는 주문일로부터 혹은 계약체결 후 10일 내에 또는 신용장개설일로부터 30일 내에 인도되어야 한다고 약정할 수 있다. 또한 인도기간을 매도인이나 매수인 또는 제3자가 정하도록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⁵⁸⁾

53)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3*, p. 576. 그러나 물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에 따라 그러한 기간의 선택권을 매수인이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54) 협약 제7조 제2항.

55)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3*, p. 576.

56) 당사자간 합의의 우선적 효력에 관하여는 협약 제6조 참조. 당사자간 확립된 관례와 관행의 효력에 관하여는 협약 제9조 제1항 참조.

57) 협약 제33조 나호.

2) 일자선택권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인도기간 중 어느 일자에 인도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⁵⁹⁾ 매도인은 인도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인도할 수 있고 그 초일이나 말일에 인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나 관례, 관행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도기간 중 일자의 선택권을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갖는 경우가 있다.⁶⁰⁾ 예컨대 물품 수요자인 매수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자선택권을 명시적으로 유보하는 경우가 있다. *Incoterms 2010*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규정을 두고 있다.⁶¹⁾ 특히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무로서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 일자선택권은 매수인이 갖는다고 하여야 한다.⁶²⁾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은 인도기간 중에 이용가능한 운송인과 운송수단을 수배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때 매수인으로서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송인의 일정을 수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은 운송계약의 내용(선적 또는 기적기간)을 매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⁶³⁾ 이러한 통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협약상 매수인은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⁶⁴⁾

그러나 생각건대, 인도장소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어야 하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일자선택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⁶⁵⁾ 매수인이 물품의 수요자로서 인도일자가 어느 일자로 선택되는지에 따라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일자선택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⁶⁶⁾

3. 합리적 기간

그 밖의 경우, 즉 계약상 인도기일이나 인도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를 확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⁶⁷⁾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합리적인지는 사안별로 제반사정을 종합적

58) 또한 인도기간 지정의 다양한 예로는 *UNCITRAL Digest*(2016), p. 133 참조.

59) 협약 제33조 나호.

60) 협약 제33조 나호 단서.

61) 예컨대 *Incoterms 2010* CPT, CIP, CFR, CIF 조건의 각 B7 참조.

62) 이기수·신창섭, 전계서, p. 76.

63) *Incoterms 2010*은 이를 명시한다(예컨대 *Incoterms 2010*의 FCA, FOB, FCA 조건의 각 B7 참조).

64) 협약 제80조 참조.

65)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 576.

66)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p. 576~577.

67) 협약 제33조 다호.

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⁶⁸⁾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물품의 성질(기성품인지 제조 또는 생산되어야 하는 물품인지, 대량생산되는 물품인지, 제조 또는 생산기간 등), 수량, 시장상황, 매수인이 물품을 구입하는 목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합리적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실무상 일정한 일자 전에 물품수령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이를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⁶⁹⁾

V.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물품인도의무에 미치는 영향

1. 장소위반

1) 교부장소 위반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에서 특히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을 수배하는 경우로서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잘못된 장소에서 물품을 교부하는 경우에, 이것이 단순히 매도인의 인도의무 위반에 그치는지 아니면 나아가 물품인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매도인이 잘못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더라도 운송인으로서의 운송계약상 상대방 당사자인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바, 그에 따라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한다면 매도인은 단지 인도의무 위반, 즉 인도장소 위반을 한 것이 되고, 따라서 매수인은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⁷⁰⁾ 그러나 매수인의 운송인이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물품수령을 거절한다면, 생각건대, 매도인은 그에 머무르지 않고 인도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⁷¹⁾ 매수인은 이러한 경우에는 물품인도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외에도 예컨대 이행청구권이나 부가기간지정권, 계약해제권 등의 구제수단을 갖게 된다.

그러나 매수인은 신의의 원칙⁷²⁾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야 하며, 따라서 물품이 잘못된 장소에서 교부되더라도 매수인에게 별다른 불편이 없다면, 생각건대, 매수인은 수령거절을 할 수 없고 단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⁷³⁾

68) 석광현, 전게서, p. 133; 이기수·신창섭, 전게서, p. 76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69) 협약상 인도시기의 맥락에서 합리적 기간에 관한 다양한 사례로는 *UNCITRAL Digest*(2016), p. 133 참조.

70)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3*, p. 540.

71)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3*, p. 540.

72) 협약 제7조 제2항.

2) 목적지 위반

한편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을 어디로 발송하여야 하는지 즉 그 운송계약상 목적지(혹은 도착지)를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계약에서 도착지가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장소가 정하여져 있지도 않고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생각건대 물품은 매수인의 영업소로 발송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매도인이 잘못된 곳으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 위의 교부장소 위반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러한 목적지 위반이 인도 의무의 위반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물품인도 자체가 부인되는지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이때에도 만약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다면 매도인은 인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되지 만,⁷⁴⁾ 매수인이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물품수령을 거절한다면 매도인은 인도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⁷⁵⁾

다만 위의 교부장소 위반의 경우와 같이, 매수인으로서 도착지 위반이 있다고 해서 항상 물품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의의 원칙⁷⁶⁾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야 한다.⁷⁷⁾ 따라서 만약 잘못된 목적지로 물품이 발송되었더라도 매수인에게 별다른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수령거절을 할 수 없고 단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정확한 목적지로 물품을 발송하였으나 운송인의 실수로 잘못된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리라 생각된다.⁷⁸⁾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으로서 운송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게 된다. 물론 신의의 원칙⁷⁹⁾에 따라 매도인도 매수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컨대 선하증권 등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운송서류를 교부하거나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등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⁸⁰⁾

73)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3, p. 540.

74)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 530; Huber and Widmer, Commentary on Articles 31, p. 354.

75)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 530; Huber and Widmer, Commentary on Articles 31, p. 354. 그러나 매수인은 물품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협약 제86조 제1항에 따라 물품보관의무를 부담한다.

76) 협약 제7조 제2항.

77)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 530.

78) *Ibid.*

79) 협약 제7조 제2항.

80)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 530.

3) 처분 하에 두는 장소의 위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도인은 합의된 장소나, 물품소재지 또는 자신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어 인도하여야 하는데, 이때 매도인이 잘못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경우에도, 위의 교부장소 위반의 경우와 같이, 이것이 단순히 매도인의 인도의무 위반에 그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물품인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지 문제된다. 생각건대, 이러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다면 매도인은 인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되고,⁸¹⁾ 매수인이 정당하게 물품수령을 거절한다면 매도인은 인도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⁸²⁾ 그리고 이때에도 매수인은 신의의 원칙⁸³⁾에 따라 비록 물품이 잘못된 장소에서 그의 처분 하에 놓이더라도 별다른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물품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사정이 다른바 매도인이 장소를 위반한다면 이는 본질적 계약위반⁸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⁸⁵⁾

2. 조기인도

매도인은 인도기일이나 인도기간(합리적 기간 포함) 내에 즉 인도의무의 이행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행기 전이나 후에 인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위반이다. 매도인이 물품을 이행기 전에 인도하는 것을 조기인도라 하는데⁸⁶⁾ 협약은 제52조 제1항에서 조기인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다. 그에 따라 매도인이 조기인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⁸⁷⁾ 매수인이 매도인의 조기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이행기에 다시 인도할 수 있다.⁸⁸⁾

81)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 540; Huber and Widmer, Commentary on Articles 31, p. 368.

82)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 31, p. 540; Huber and Widmer, Commentary on Articles 31, p. 368.

83) 협약 제7조 제2항.

84) 협약 제25조.

85) 협약 49조 제1항. 또한 Huber and Widmer, Commentary on Articles 31, p. 368 참조. 물론 매수인은 물품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협약 제86조 제1항에 따라 물품보관의무를 부담한다.

86) 인도기간의 말일만 있고 초일이 없는 경우(예컨대 제33조 다호의 “합리적 기간” 포함)에는 조기인도가 발생하지 않는다.

87) 협약 제52조 제1항.

88) Honnold, *op. cit.*, p. 347; 오원석 역, 전게서, p. 445.

이와 같이 매도인의 조기인도는 계약위반이므로 매수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각건대 예외적으로 신의의 원칙에 따라 매수인의 거절권은 부인되어야 한다.⁸⁹⁾ 아무런 제한 없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조기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면 조기인도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형평에 반하는 정도의 큰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UNIDROIT 원칙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조기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그렇게 하는 데 적법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기이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⁹⁰⁾ 생각건대 이러한 규칙을 협약상 물품인도의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조기인도를 거절하는 데 적법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인도를 거절하는 것은 협약상 신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조기인도를 거절하는 데 적법한 이익이 없어서 신의의 원칙상 조기인도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도 조기인도가 계약위반이라는 점은 부인되지 않는다.⁹¹⁾

매수인이 매도인의 조기인도를 수령하는 경우나 신의의 원칙에 따라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조기인도로 추가비용(추가적인 물품보관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⁹²⁾

한편 예컨대 매수인의 대금지급시기가 매도인의 물품인도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 즉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의 이행기가 정하여져 있고 매수인이 “인도와 동시에”(“on delivery”) 대금을 지급하여야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조기인도를 자발적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매수인의 대금지급시기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문제된다. 생각건대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시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며, 따라서 매수인은 조기인도를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물품인도기일에 대금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⁹³⁾ 매도인이 스스로 계약을 위반

89) Müller-Chen, Commentary on Article 52, in: Ingeborg Schwenzer ed,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2015)(이하 ‘Müller-Chen, Commentary on Article 52’로 인용한다), p. 816.

90) UNIDROIT 원칙은 제6.1.5조 제1항.

91) 그러나 반대견해로는 석광현, 전게서, p. 133(“매수인이 [사전인도]를 수령하면 사전의 인도도 계약에 적합한 이행이 된다.”) 참조. 또한 형약심·박성호,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에 관한 연구 -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42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17, p. 37(“매수인이 [사전인도]를 수령하면 사전의 인도도 계약에 적합한 이행이 된다.”)도 같다.

92) UNIDROIT 원칙은 제6.1.5조 제3항은 이를 명시한다.

93) Müller-Chen, Commentary on Article 52, pp. 816~817. 이는 UNIDROIT 원칙 제6.1.5조 하에서도 동일하다(UNIDROIT Principles 2016, pp. 191~192; 오원석·최준선·허해관 공역, 전게서, pp. 173~174 참조).

하면서 매수인에게 조기에 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⁹⁴⁾ 다만 매수인은 그의 선택으로 조기인도를 수령하면서 그와 동시에 대금지급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언급하자면 이와 같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시기가 매도인의 물품인도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조기인도를 거절하는 것이 신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3. 일부인도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 인도하는 것, 즉 수량부족은 계약위반이다.⁹⁵⁾ 그러나 매도인이 일정한 수량의 종류물(여러 종류의 종류물 포함)을 인도하는 경우와 같이 인도가 가분적(可分的, divisible)인 경우에 매수인은 일부인도를 거절하지 못하며 수령하여야 한다.⁹⁶⁾ 또한 매수인은 수령한 수량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일부인도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면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하고 물품을 거절할 수 있다.⁹⁷⁾

한편 일부인도 즉 수량부족의 경우에 매수인은 미인도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거나 부가기간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미인도부분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매수인은 그와 함께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결 언

위의 본문에서 보았듯이, 본고는 협약상 인도의 개념을 정의한 후 이어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의 이행지(인도장소)와 이행기(인도시기)를 고찰한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상 인도는 “교부”와 “처분 하에 두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교부란 물품에 대한 물리적 지배를 이전하는 것, 즉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물리적 지배를 종료하고 운송인이 그 지배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은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물리적 지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필요한

94) Müller-Chen, Commentary on Article 52, p. 817.

95) 협약 제35조 본문.

96) 협약 제51조 제1항.

97) 협약 제51조 제2항.

모든 행위를 다하는 것 즉 매수인이 더 이상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물품에 대한 지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다.

둘째, 매도인의 물품인도장소는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 운송인 곧 운송인이 소재한 곳이다. 여기의 운송인은 독립된 운송인이어야 한다. 복수의 독립된 운송인이 순차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경우에 인도는 물품이 제1운송인 즉 최초의 운송구간을 맡은 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일어난다. 포워드도 매도인을 위하여 실제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운송을 일부 실행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될 수 있다.

매도인은 어디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교부장소를 계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되, 계약에서 그에 관하여 침묵한 경우에 교부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예컨대 특히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러한 선택권을 매수인이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교부장소 내의 구체적 교부지점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을 수배하는 경우로서 매도인이 잘못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한다면 매도인은 인도 의무를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운송인이 물품수령을 거절한다면 매도인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한편 매도인이 잘못된 곳으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에도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다면 매도인은 물품인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되고 매수인이 물품수령을 거절한다면 매도인은 물품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다만 매수인은 도착지 위반이 있다고 해서 항상 물품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는 신의의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지 않고 또한 매도인이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물품인도장소는 계약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이 물품소재지를 알았던 경우에는 그 소재지이고 몰랐던 경우에는 매도인의 영업소이다.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인 경우에 매도인은 그의 영업소의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수인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신의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매수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 이전 사실을 매수인에게 적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잘못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 즉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경우에,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다면 매도인은 인도 의무를 위반한 것에 그치게 되고 매수인이 물품수령을 거절한다면 매도인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그러

나 매수인은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잘못된 장소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더라도 매수인에게 별다른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수령거절을 할 수 없다.

셋째, 매도인의 물품인도시기에 관하여 먼저 매도인은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기일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인도하여야 하는지는 다른 합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선택권은 신의의 원칙 특히 합리성의 원칙의 제한을 받으며, 매도인은 물품인도장소의 통상적인 영업시간 중에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을 그 기간 내의 어느 일자에 인도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인도기간 중에 어느 일자에 인도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나 관례, 관행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일자선택권을 갖는다. 그러나 인도장소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어야 하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일자선택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매수인이 물품의 수요자로서 인도일자가 어느 일자로 선택되는지에 따라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일자선택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계약에 의하여 인도기일이나 인도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를 확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합리적인지는 사안별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이 조기인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조기인도를 거절하는 데 적절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인도를 거절하는 것은 협약상 신의의 원칙에 반한다. 한편 매수인이 매도인의 조기인도를 수령하는 경우나 신의의 원칙에 따라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조기인도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끝으로 그간 국내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충분성 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본고가 매도인의 물품인도장소와 인도시기의 문제 및 그와 관련하여 인도장소(목적지 위반 포함) 위반이나 조기인도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김상만, “Incoterms 2010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CISG상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 및 서류인도 의무에 대한 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102호, 법무부, 2011. 12.
- 박남규,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 - CISG와 Incoterms 2010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6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 박성철, “Incoterms 2010상 물품인도 및 운송계약조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 서헌재, 국제거래법, 제4판, 법문사, 2006.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 양석완,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인도’의 범위에 관한 법적 검토”, 기업법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09.
- 오원석 역, UN통일매매법, 제2판, 삼영사, 2004.
- 오원석 · 최준선 · 허해관 공역,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법문사, 2006.
- 이기수 · 신창섭, 국제거래법, 제6판, 세창출판사, 2015.
- 최준선, 국제거래법, 제10판, 삼영사, 2015.
- 허해관 · 오태형,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위험이전”, 무역상무연구 제7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7.
- 형약심·박성호,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에 관한 연구 -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42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17.
- ICC, Incoterms[®] 2010, ICC Publication No 715, 2010.
-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 Ulrich Huber and Corinne Widmer, Commentary on Articles 31 and 33, in: Peter Schlechtriem and Ingeborg Schwenzer eds,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2nd (Englis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16 edition, 2016.

UNIDROIT, *UNIDROIT Principles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2016*, UNIDROIT, 2016.

Widmer Lüchinger, Commentary on Articles 31 and 33, in: Ingeborg Schwenzer ed,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Müller-Chen, Commentary on Article 52, in: Ingeborg Schwenzer ed,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ABSTRACT

The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 Goods under CISG

Hai-Kwan HEO

Under CISG the places of delivery by the seller of the goods are: If the seller is not bound to deliver the goods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and the contract of sale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the seller has to hand the goods over to the first carrier for transmission to the buyer. However, if the contract does not involve carriage of the goods, he has to place them at the buyer's disposal at the place where,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both the seller and the buyer knew that the goods were at, or were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This rule applies when the contract relates to specific goods, or unidentified goods to be drawn from a specific stock or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Finally, in any other cases the seller has to place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 at the place where the seller had his place of busines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s to time of delivery, if a date is fixed by 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the seller has to deliver the goods on that date. If a period for delivery is fixed by 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he has to deliver the goods on any date within that period. In this way the seller chooses the specific date of delivery within that period, while circumstances indicate otherwise that the choice is to be made by the buyer. There is no such date or period, the seller has to deliver the goods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f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before such the date or period, the buyer is entitled to take delivery or refuse to take delivery.

Under these backgrounds of provisions of CISG, this study first suggests the concepts of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by the seller to the carrier and the placing them at the buyer's disposal. Then it goes further to look into exactly where and when the delivery has to occur.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more examines what happens if there is a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in connection with the delivery. That is, if the seller delivers non-conforming goods or at wrong place; what if there is a partial delivery or a premature delivery.

Keywords : Delivery, Place of Delivery, Time for Delivery, Handing over of the Goods, Premature Delivery, Partial Delivery